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8일, 박홍배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임. 기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순한 관리감독기능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산업안전보건과 같이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이 요구되는 분야는 부처 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비슷한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전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최근 ESG 경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조성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업무 범위는 확장 추세이나, 산업현장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그 발생 건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단일 차관하에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차관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집행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의 규정형식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임.

현행법 제2조제3항에서는 실장·국장·과장의 명칭을 본부장·단장·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부장은 최대 실장급에 대응하는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각 부처의 본부장은 업무 특성 및 관할범위에 따라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4장(행정각부)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의 본부장을 각각 정무직으로 두면서, 현행법 제7조제2항에서는 이들 본부장에게 차관과 같게 직무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규정형식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부 업무의 기능, 기구·인력 측면 등에서 현재 실장급 보조기관을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음.

개별 행정부처에 두는 ‘본부’는 사업단위별로 업무완결이 가능하고 정책 집행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보조기관 중 하나로, 조직편성의 자율성·유연성 확대를 위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부처별 ‘본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

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차관급 본부를, 법무부·고용노동부·우주항공청·경찰청 등은 실장급 본부를 각각 두고 있는바,

차관급 본부가 설치된 4부의 조직 및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보조기관인 ‘과’ 단위 기준으로 10~47과, 인력 기준으로 122~622명 등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기존 실장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격상 시 조직의 위상 강화와 아울러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무직 본부장은 특정 정책분야 총괄·조정 등 전문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경우에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써, 현재 수행 중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능 및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취지, 현행법 체계상 측면, 정무직(차관급) ‘본부’ 설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고용노동부에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감독 등을 전담하는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